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적용시한(1991. 12. 31)만료에 따른 시한연장임
-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

4. 주요골자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태양열난방 주택의 건축시 취득세, 등록세, 면세

5. 검토의견

- 주거용 건축물 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집열관을 지붕위에 설치하고 그 집열관을 통해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촉진을 위하여는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 11항 충청북도 점인계약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율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

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20분)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